

물품공급·기술지원 협약서

- 사업명 : 친환경 항로표지선(여명2호) 대체건조 주요장비(발전기) 구매
- 발주기관 :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
- 제조사(공급사) : 현대선박엔진(주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선박용 디젤 발전기 세트(PNK, 104KW/130KVA 60HZ, 225V, 3Phase)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(공급사)는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(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위 물품 중 제조사(공급사)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에 따른 제조사(공급사)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,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(공급사)가 협의하는 발주 금액은 2세트 / 금 132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(공급사)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제조사(공급사)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년 9 월 1 일

발주기관

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(인)



제조사(공급사)

현대선박엔진(주)

